2020년도 제2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0. 9. 14.(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최현용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전문위원

2. 전차(제2020-19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61건(안건번호 제2020-115709호~11666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1570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첨부된 토렌트 파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46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58건(안건번호 제2020-2969호~3026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9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49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9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개 안건, 동일 게시물을 중복으로 청구한 4개 안건(6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0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9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회의록 전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음.

- B 위원: 회의록에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그대로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 C 위원, D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싸이더스', 'CJ엔터테인먼트', '㈜한글과컴퓨터', 'Adobe Systems Inc.',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미국 AMC', '미국 CBS', '미국 HBO', '일본 AT-X', '일본 NTV', '일본 후지TV'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46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0-115709호~116669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5709호는 네이버 블로거가 "☆☆☆☆☆☆☆☆☆☆☆☆☆☆"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만화 '★★★' 전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연재된 만화임. 단행본은 총 72권으로, 한 권당 약 4,500원에 판매중임. 보호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의 토렌트 파일을 통해 불법복제물(jpg 파일)이 실제로 다운로드 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1570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첨부된 토렌트 파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2P 시드 파일을 게시한 사안으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토렌트 파일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토렌트 파일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1570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5710호~11666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5804호는 2015. 3. 10. 출시된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240P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게임 원본은 32,000원, ALL DLC는 225,100원에 구매할 수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 'Adobe Animate CC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5989호는 2018. 12. 11. 출시된 어도비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Adobe Animate CC 2020'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정품 프로그램은 월 24,000원에 사용할 수 있음.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불법복제물은 자동인증 버전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 하였을 가능성이 큼.

  (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록'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6507호는 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록'의 2020. 8. 19. 방영분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110P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욕창'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6532호는 영화 '욕창'을 밴드 '○○○'에서 제공한 사안임. 영화 '욕창'은 2020. 7. 2.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로 감독은 심혜정이며 2020년 제26회 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심사위원 우수상, 이날코 심사위원상을 수

상하였음. 해당 밴드 회원은 73명으로, 영화 ‘욕창’ 외에도 2020. 7. 29.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2019년작 미국 공포 영화 ‘뱀파이어 헌터스 D’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음.

(방송 ‘서울촌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16554호는 방송 ‘서울촌놈’의 2020. 8. 16. 방영분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110P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15710호~11666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0-115710호~11666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C 위원: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동의함.

- B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15710호~11666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15709호~11666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8쪽부터 2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969호~3026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9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나머지 49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9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개 안건, 동일 게시물을 중복으로 청구한 4개 안건(6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9. 21.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